

[붙임 1] 대학에 적합한 위험물 시설

■ 유형1) 일반취급소 (화학실험실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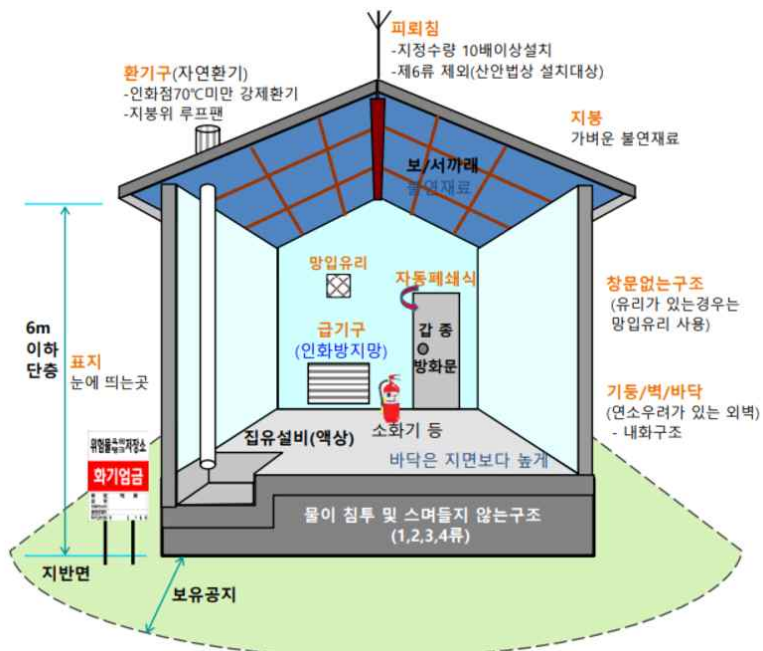
- 화학물질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학과(부)에 적합
- 건물 내 화학실험실 설치 가능
-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
- 적용시설 내용
 - 건물 및 화학실험실 내부의 벽·기둥·바닥 및 보는 내화구조
 - 복도 외의 다른 용도와 개구부 설치 금지
 - 창은 망입유리 또는 방화유리, 출입구는 갑종방화문
 - 가연성 유증기 체류 장소는 배출설비를 설치하고 덕트가 벽관통 시 자동폐쇄식 방화댐퍼 설치
 - 위험물 보관설비(시약장 등): 금속재질, 보냉장치, 밀폐구조, 유리 사용 시 망입유리 또는 방화유리
 - 표지 및 게시판, 전기설비 기준, 알킬알루미늄 등·아세트알데히드 등·히드록실아민 등 특례규정 등



- ※ 「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40조(일반취급소의 기준) 별표16
: (일반취급소의 위치·구조 및 설비의 기준) ⇒ 'X의2. 화학실험의 일반
취급소의 특례' 신설

■ 유형2) 위험물 옥내저장소 (단독건축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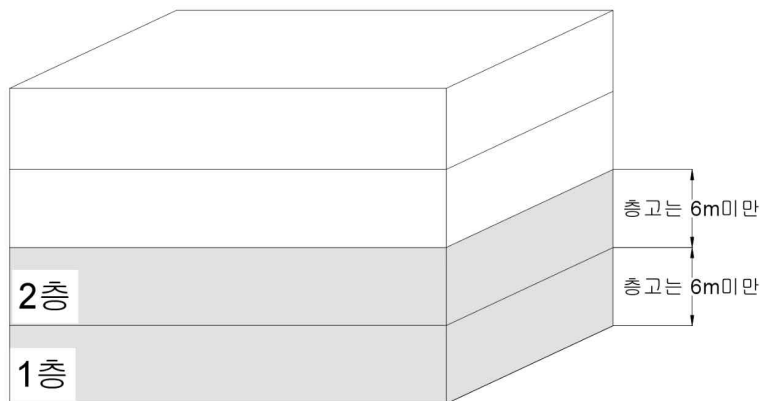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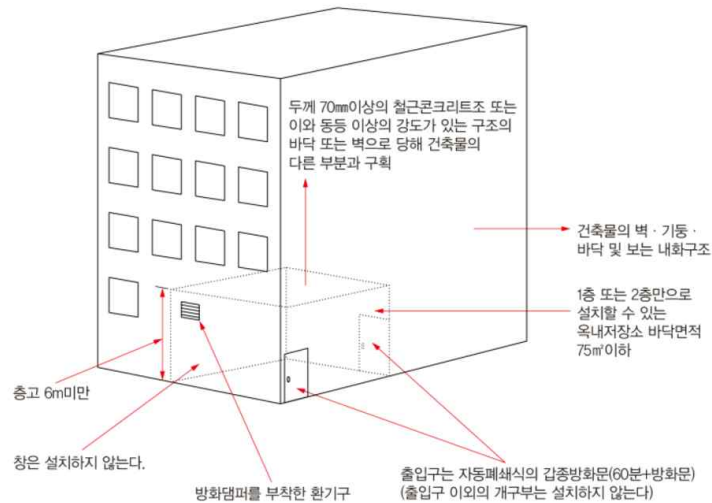
- 위험물을 옥내(지붕+기둥+벽으로 둘러싸인 장소)에서 저장하는 시설
- 가장 많은 종류의 위험물 저장 가능



※ 「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9조(옥내저장소의 기준) 별표5

■ 유형3) 위험물 옥내저장소 (복합용도건축물)

- 일반건축물(내화구조) 내에 위험물저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
 -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것
 - 다층 건축물의 일부에(1층 또는 2층) 설치 가능
- 옥내저장소의 벽, 기둥, 바닥, 보가 내화구조인 건축물내에서만 설치 가능
 - 건축물의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설치 불가
-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은 지면 보다 높게 설치하고, 그 층고를 6m 미만으로 함



※ 「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9조(옥내저장소의 기준) 별표5
 Ⅲ. 복합용도 건축물의 옥내저장소의 기준.

■ 위험물 시설 유형별 설치 기준 비교

구분	일반취급소 (화학실험실)	위험물 옥내저장소	
		단독건축물	복합용도건축물
건축물구조	내화구조	-	내화구조
허가가능수량	30배 미만	제한 없음	지정수량 20배 이하
안전거리	-	필요(제외 규정 있음)	-
보유공지	-	필요	-
표지 및 게시판	설치	설치	설치
벽, 기둥, 바닥, 보 /지붕	내화구조 /내화구조	내화구조 /불연재	내화구조 /지붕은 윗층 없으면 불연재
바닥면적	-	2,000㎡ 이하	75㎡ 이하
설치가능층	지하층 외 모든 층	단층	1층 또는 2층
출입구	갑종방화문	갑종방화문	갑종방화문
창	망입유리, 방화유리	망입유리	설치 불가
채광·조명	설치	설치	설치
환기설비	설치	설치	설치
전기설비	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	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	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
배출설비	가연성 미분이나 유증기 체류 예상 시	인화점 70℃ 미만 위험물	인화점 70℃ 미만 위험물
피뢰설비	-	지정수량 10배 이상	-

끝.